

[별표 8]

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(제18조 관련)

1. (위원의 구성) 불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하며,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가. 구매 장비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 등에서 소방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·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
 - 라.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방관서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마. "가"부터 "라"까지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2. 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불용처분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심의업무를 관리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소방기관의 장이 위촉한다.
4. (심의회 보조 및 기록) 심의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소방장비 구매·관리 담당부서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인 소방공무원으로 하고, 서기는 해당 소방장비의 구매·관리 사업담당자로 한다. 이 경우 간사는 아래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‘의결서’와 ‘회의록’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5. (심의회 회의)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6. (심의회의 업무)
 - 가. 위원장은 소방장비의 연장사용 및 불용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소집한다.
 - 나. 위원장은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불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부서의

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다. 위원장은 불용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물품관리부서,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.

라. 불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) 내용연수의 경과, 파손 또는 훼손, 성능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방장비에 대한 재사용, 연장사용, 불용의 결정
- 2) 재사용, 연장사용, 불용의 결정을 위한 오염 제거 등 세척 또는 정비이력, 장비의 상태, 부품의 수급 여부, 운용현황 등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검토
- 2)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소방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에 따른 수리(수선) 후 재사용 가능 여부
- 3) 소방장비의 불용에 따른 대체 소방장비의 보유 여부, 불용품 분류의 적정성 검토
- 4) 불용 소방장비의 재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검토 및 폐기 방법의 결정
- 5) 그 밖의 소방장비의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. (위원의 제척·회피)

가.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- 1)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)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
- 3)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된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)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나. 위원이 "가"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7. (위원의 임명·위촉 해제) 소방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가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나. 임명된 위원이 다른 소방관서로 진출된 경우

다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위원의 제척 사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8. (의견청취 및 현지조사)

- 가. 위원장은 관련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나.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에게 관계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9. (비밀보호의 의무)

- 가. 위원은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의 누설 또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.
- 나. 심의회의 운영 중 취득한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으며 참석위원은 회의 전에 제4호 서식의 '서약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0. (교육 등) 소방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을 소방장비 규격·불용·검사와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국내·외 전시회 또는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2. (불용품 분류) 불용심의회는 소방장비의 불용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- 가. 관심장비 :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
- 나. 주의장비 : "가"에 해당되는 소방장비 중 안전성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
- 다. 심각장비 : "가" 및 "나"의 장비 중에서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장비

[별표 8의 서식 제1호]

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

[illegible]

[별표 8의 서식 제2호]

의 결 서

[illegible]

[별표 8의 서식 제3호]

회 의 록

일 시	
장 소	
참 석 자	위원장(반장) 등 명
회의안건	
회의방법	
회의내용(간략히 기록)	

서 약 서

본인은 20 년 월 일 ~ 월 일까지 「○○○장비 불용심의회」의 심의위원(반원)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「○○○장비 불용심의회」의 심의(평가)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
2.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.

년 월 일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

(인)

○○소방본부(서장)장 귀하